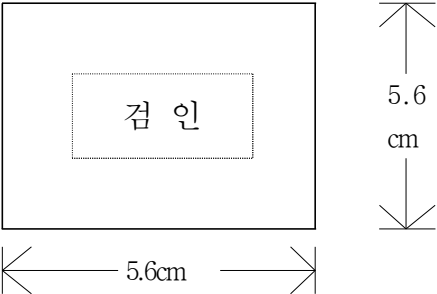


일련번호	
------	--

후 보 자 추 천 장

1. 선거명(선거구명)
2. 추천받는 사람

가. 성 명
나. 생년월일(성별)
다. 주 소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행 정 동)	추천연월일	서명 또는 날인

- 주: 1. "선거구명"란은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거구명을 기재하되, 대통령선거에서는 추천을 받는 "시·도명"으로,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자치구·시·군명"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구역별로 구분되게 각각 추천받아야 합니다.
2.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의 "주소"란에 동지역의 도로명 주소 기재시 행정동명(○○동)을 함께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추천하는 사람의 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로 됩니다.
3.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규칙 제19조제3항 관련) <개정 2017. 1. 23.>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입후보예정자
 -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소(전화번호)
3. (검인)·(교부)신청매수 매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검인)·(교부)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후보예정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